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# 포항시보

제772호 2010. 3. 16(화)

- 시장지시사항..... 2
- ◀ 입법예고 ▶
- 포항시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(제2010-336호) ... 5
- ◀ 공 고 ▶
- 과태료 고지서(부과) 공시송달 공고(제2010-296호) ..... 12
-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“안” 열람·공고(제2010-293호) ..... 13
- 유어장 지정 내용 공고(제2010-14호) ..... 15
- 第163回 浦項市議會(臨時會) 集會公告(제2호) ..... 1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시장 지시(훈시)사항**

－ 2010. 3. 15(월)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－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3. 15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폭설시 전직원 제설작업에 신속히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그리고 새벽 일찍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힘써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</li> <li>○ 일자리창출 전략회의와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는 부진했지만,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는 자리였음. 지난 3.4일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음.</li> <li>－ 지난해 간부공무원 임금 3%와 경상경비 절감액 등 투입으로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을 통해 OECD국가중 경제위기 탈출 모범국가로 세계에 정평났으나 아직까지 어려운 경제상황이고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안임.</li> <li>－ 민선4기 출범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해 강조하여 왔고, 장기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기업유치겠지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임.</li> <li>－ 구직자는 많지만 기업에서 일손 부족현상이 발생하고, 기업과 구직자간 임금격차가 심해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. 일자리지원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기업, 구직자, 전문상담원간 정보공유와 행정지원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.</li> <li>－ 행정인턴이 허드렛일만하여 재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낭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, 행정인턴의 기업체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음.</li> <li>－ 조례 제·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람.</li> <li>－ 일자리 나누기사업(1기업 1고용)이 큰 기업에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겠으며, 우리지역에 여성인력이 많은데 철강공단에도 여성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.</li> </ul> </li> </ul>	<p>전 부 서</p> <p>전 부 서</p>

<p>훈 시 (3. 15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무추진시 추진목적을 잘 파악하여 2중, 3중 투자하여 일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로 녹도조성후에 볼라드 설치시 간격을 넓게하여 차량진입으로 녹도 및 경계석이 훼손된 곳이 많음. 향후 시설물 설치 목적을 잘 알고 설치토록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.</li> </ul> </li> <li>○ 최근 여권발급 민원이 많아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, 상황에 맞추어 인력을 적절히 투입하여 빠른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.</li> <li>○ 2,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쓴다면 못 할 일이 없을 것임. 간부공무원이 앞장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해 주시고, 일로서 평가하고, 일로 평가 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람.</li> </ul>	<p>전 부 서 (도시녹지과)</p> <p>새마을평생 학습과</p> <p>전 부 서</p>
<p>지시 ‘10-044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중증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 등의 생산품(제품)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일 것임.</li> <li>- ‘현미상황차, 행복한 피자’ 등 제품에 대해 명함 제작 배부하면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임을 강조 홍보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 검토 추진하기 바람.</li> <li>- 공무원들이 앞장서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이 많이 취업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고,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와 함께 행정신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.</li> </ul> </li> </ul>	<p>주민복지과</p>
<p>지시 ‘10-045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제설작업시 사용된 모래 등을 조속히 제거 및 청소토록 조치 바람, 우수기 도래전에 배수불량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수구 정비를 완료토록 조치 바람.</b></li> </ul>	<p>청 소 과 하수도과 재난안전과 (읍 면 동)</p>

부시장 지시사항

- 2010. 3. 15(월)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3. 15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설작업, 산불예방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림.</li> <li>○ 부서별 일자리창출 전략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고 예산을 반영토록 힘써 주시고, 경제산업국에서는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기 바람.</li> <li>○ 부서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토록 각종 행사 및 관련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여 대화행정(소통)이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람.</li> </ul>	<p>전 부 서</p> <p>경제노동과 (전 부 서)</p> <p>전 부 서</p>

**입법예고**

포항시 공고 제2010- 336호

『포항시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년 3월 15일

**포항시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**

**1. 제정이유**

성폭력, 가정폭력, 유괴 등 아동·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항시 차원에서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가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정의, 책무 및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
나.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역연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

다.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
라. 아동·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)

**3. 관련법령**
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:여성가족과장,주소: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, 전화:054-270-3033, 팩스:054-270-3020)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

**포항시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.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**제1장 총칙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아동폭력”이란 아동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학교폭력, 유괴, 실종 등을 말함

- 2. “여성폭력”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, 자유권,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,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함

**제3조(책무)** ①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·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**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아동·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역연대의 설치·운영

**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**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포항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

**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**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,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아동·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, 위촉직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시의회 의원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
3. 아동·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4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
5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기관
6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

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 한다.

제7조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
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4. 지역 내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
5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6.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
7.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통한 탈 성매매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,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### 제3장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

제11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
2. 아동·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·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
3.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아동·여성폭력 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실태를 파악 하고 아동·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·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및 법인 등에 의뢰하여 아동·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실태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성별·연령·혼인상태·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
- 2. 아동·여성폭력 발생요인, 발생유형,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 등)** ① 시장은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사업비의 지원 등

**제14조(사업비의 지원)**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15조(관련정보의 제공)**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7조(수당 등)**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·여성보호시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

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관련법령

○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제4조 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- 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- 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- 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- 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제3조 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 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2010 - 296 호

과태료 고지서(부과) 공시송달 공고

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, 동법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(부과)를 우편(등기) 발송하였으나, "보관기관경과"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(공고) 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. 3. 9

- 1. 공고제목 :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(부과) 공시송달
- 2. 처분근거 :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,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
- 3. 처분원인 :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미이수
- 4. 처분대상

대상자			과태료부과 금액(원)	과세번호	건수	등기번호	반송사유	비고
납세자	주민번호	주소						
이명희	661104- *****	포항시 남구 대잠동 978-1번지	250,000	001007	1	10948-6500- 2775	보관기관경과	부과

- 5. 공고기간 : 2010. 3. 9 ~ 3. 23(15일간)
  - 6. 게시장소 : 포항시청, 구청 읍면동 게시판, 인터넷 홈페이지, 시보
  - 7. 문의사항 : 포항시청 테라노바팀 광고물담당 (tel.270-2363)
- ※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포항시 공고 제2010 - 293호

**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열람·공고**

포항 도시관리계획(미관지구) 결정 “안”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,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0년 3월 10일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

가. 미관지구 결정 “안”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비고
신설	15	미관지구	일반미관지구	남구 송도동 378-353번지 일원	14,820	1,070	15	

나. 지정 목적 : 송도해수욕장앞 대로2류23호선의 일부 개통예정에 따라 해수욕장 인  
근지역의 경관과 미관을 보호

**2. 열람기간 및 장소**

-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열람장소 : 포항시 도시계획과
- 열람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**3 주민의견 제출**

- 제출기간 : 열람기간내
- 제출장소 : 포항시 도시계획과
-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

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(☎054-270-346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공고 제 2010-14호

유어장의 관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유어장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박승호

2010년 3월 11일

○ 공고사항

지정번호	포항제 2010-01호	
지정의 종류	장길리어촌계 유어장지정	
지정자	주소	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45번지
	성명	장길리 어촌계 (대표 어촌계장 정석화)
	사업자등록번호	506-90-36268
명칭	장길리 복합남시공원 유어장	
유어장지정기간	2010. 3. 11. ~ 2017. 5. 11.	
유어장 위치와 구역	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마을어장 지선	
처분 내역	유어장지정 (7.1ha)	
처분 년월일	2010. 3. 11.	

포항시의회공고 제 2 호

## 第163回 浦項市議會(臨時會) 集會公告

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63回 浦項市議會(臨時會)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.

日時：2010年 3月 26日(金曜日) 午前 11時 30分

場所：浦項市議會 本會議場

2010년 3월 12일

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